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41
----------	------------

제안연월일 : 2026년 4월 28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건의안의 취지와 제안 배경을 고려해 볼 때 건의안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7조의4”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4”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의안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조의4”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4”로 수정함.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조의4”를 “「주민등록법」 제7조의4”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p> <p>대한민국의 조직폭력 범죄는 과거의 단순 폭행·갈취에서 벗어나 유흥업, 불법 대부업, 불법 도박, 가상자산 세탁 등 지능형·기업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p> <p>오양종과 최용섭 등이 관련된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단순 폭행 및 갈취가 아닌 폭력을 위시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로, 국회는 이러한 지능화·기업화된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p> <p>이는 현행 형사 처벌 체계의 한계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최근 조직폭력의 양상은 단순 폭력을 넘어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합법의 외피를 쓴 ‘기업형 범죄’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물리적 폭행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만 치중되어 있어, 조직의 존립 근거인 경제적 기반을</p>	<p style="text-align: center;">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차단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p> <p>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 제재의 법적 공백과 행정력 무력화도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불법 업소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 ‘조직폭력 연루’에 따른 즉각적인 인허가 취소나 영업 제한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의 대여를 통한 재개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장소’를 규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p> <p>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입체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됩니다. 수사기관의 ‘형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가 결합된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폭력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강력한 국가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폭력단 배제 조례’를 통해 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p> <p>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제한하는 성과로 인해 생겨나는 선</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조직원의 탈퇴를 유도해야 함도 중요합니다.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파격적인 신변 보호와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조력자에게는 엄중한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 내부의 분열과 사회적 자정 작용을 유도해야 합니다.</p> <p>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제한하는 성과로 인해 생겨나는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조직원의 탈퇴를 유도해야 함도 중요합니다.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파격적인 신변 보호와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조력자에게는 엄중한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 내부의 분열과 사회적 자정 작용을 유도해야 합니다.</p> <p>즉,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조직폭력 범죄와 그 조직원에 대해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질식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강탈하던 이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p>지방자치단체의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에 대한 배제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누가 조폭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를」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 단체 구성원 명단을 지자체의 행정 목적 (입찰·인허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p> <p>조직폭력 조직이 거점을 옮겨 다니며 세탁 영업을 하는 것을 막고, 건물주가 조직 자금 및 거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식품 위생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업자(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 장소 (지번)에 대해 일정 기간 재허가를 금지하여 ‘바지사장’을 통한 재개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p> <p>건물주가 조폭 임차인을 방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은닉을 돕는 건물주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p> <p>“조직을 나가면 죽는다.”는 공포를 “국가가 내 신분을 바꿔 보호해준다.”는 안도감으로 치환하고 조직폭력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야 합니다. 개정 내용에는 단순 신변 보호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보 변경 등 근본적인 신원 보호 지원 사항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p> <p>이는 단순히 법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강화와 조직폭력 범죄의 경제적 질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이자 논리입니다. 특히 장소 기반 규제와 정보 공유 법제화는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국회의 개정 입법 권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p> <p>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에 관한 요청을 주문합니다.</p> <p>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p> <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제4조의2(조직폭력 정보의 행정적 제공)를 신설, 해당 조항에는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계약의 적격성 심사, 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함.</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둘, ‘장소 기반’의 지번 규제 영업 제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조직폭력 단체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유입받아 취소된 경우, 해당 장소에서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영업 허가를 할 수 없음을 추가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에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및 조직폭력 연루로 등록 취소된 지점의 지번에 대해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함.</p> <p>셋, 조직폭력 범죄 조력 건물주에 대한 연대 책임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직폭력 범죄 방조 및 장소 제공 행위에 한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는 과태료 상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보완하여 “조직폭력 단체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수탁한 경우 처벌 수위를 일반 명의신탁보다 가중한다”라는 처벌 강화를 명시하도록 개정함.</p>	<p>(원안과 같음)</p> <p>(원안과 같음)</p>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조직폭력 범죄는 과거의 단순 폭행·갈취에서 벗어나 유흥업, 불법 대부업, 불법 도박, 가상자산 세탁 등 지능형·기업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양종과 최용섭 등이 관련된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단순 폭행 및 갈취가 아닌 폭력을 위시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로, 국회는 이러한 지능화·기업화된 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민생 경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 형사 처벌 체계의 한계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최근 조직폭력의 양상은 단순 폭력을 넘어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합법의 외피를 쓴 ‘기업형 범죄’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데 비해 현행법은 물리적 폭행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만 치중되어 있어, 조직의 존립 근거인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 제재의 법적 공백과 행정력 무력화도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불법 업소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 ‘조직폭력 연루’에 따른 즉각적인 인허가 취소나 영업 제한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의 대여를 통한 재개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장소’를 규제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입체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됩니다. 수사기관의 ‘형벌’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 가 결합된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폭력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강력한 국가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폭력단 배제 조례’ 를 통해 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제한하는 성과로 인해 생겨나는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조직원의 탈퇴를 유도해야 함도 중요합니다.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파격적인 신분 보호와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에 장소를 제공하는 조력자에게는 엄중한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조직 내부의 분열과 사회적 자정 작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즉,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조직폭력 범죄와 그 조직원에 대해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질식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강탈하던 이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에 대한 배제 조례’ 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누가 조폭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필터링 시스템’ 의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보유한 범죄단체 구성원 명단을 지자체의 행정 목적(입찰·인허가)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폭력 조직이 거점을 옮겨 다니며 세탁 영업을 하는 것을 막고, 건물주가 조직 자금 및 거점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식품위생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영업자(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 장소(지번)에 대해 일정 기간 재허가를 금지하여 ‘바지사장’을 통한 재개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조폭 임차인을 방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은닉을 돕는 건물주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을 나가면 죽는다.”는 공포를 “국가가 내 신분을 바꿔 보호해준다.”는 안도감으로 치환하고 조직폭력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 내용에는 단순 신분 보호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보 변경 등 근본적인 신원 보호 지원 사항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 강화와 조직폭력 범죄의 경제적 질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이자 논리입니다. 특히 장소 기반 규제와 정보 공유 법제화는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기에 국회의 개정 입법 권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에 관한 요청을 주문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제4조의2(조직폭력 정보의 행정적 제공)를 신설, 해당 조항에는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계약의 적격성 심사, 인허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자가 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함.

둘, ‘장소 기반’의 지번 규제 영업 제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조직폭력 단체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유입받아 취소된 경우, 해당 장소에서는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영업 허가를 할 수 없음을 추가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및 조직폭력 연루로 등록 취소된 지점의 지번에 대해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함.

셋, 조직폭력 범죄 조력 건물주에 대한 연대 책임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직폭력 범죄 방조 및 장소 제공 행위에 한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라는 과태료 상한 특례를 신설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를 보완하여 “조직폭력 단체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수탁한 경우 처벌 수위를 일반 명의신탁보다 가중한다” 라는 처벌 강화를 명시하도록 개정함.

넷, 조직 탈퇴자 보호 및 내부고발자 특별 보호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제13조의2(조직폭력 이탈자의 신원 변경 지원)를 신설하여 “경찰관은 조직폭력 단체를 이탈하여 범죄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성명의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절차를 전담 지원하여야 한다.”를 명시함.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 단체 이탈 및 신고를 추가하고,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30일 이내(패스트트랙)에 완료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명시함.

2026. 03. 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